예 산 총 칙

2014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4년도 세입 ·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 · 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34,573,579	40,037,207
일반회계	1,090,825,502	32,724,765
특별회계	243,748,077	7,312,442
공기업특별회계	183,319,780	5,499,59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91,226,220	2,736,78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2,093,560	2,762,807
기타특별회계	60,428,297	1,812,849
주택사업특별회계	1,906,000	57,18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7,434,831	223,045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704,000	21,120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8,199,516	845,985
교통사업특별회계	17,517,031	525,511
대지보상특별회계	1,139,295	34,179
기반시설특별회계	44,716	1,341
수질개선특별회계	3,482,908	104,487

제 2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 · 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 ·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5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6 조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10,780,507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2014년도 일반회계 지방채차입액은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